

#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 개선방안

2021. 12.

정재호 · 이재선



#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 개선방안

2021. 12.

정재호 · 이재선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선 특수전문직 3급(관세사)

# 목 차

I. 서론	1
II. 세관장 확인의 개념 및 의의	4
1. 수출입 요건	4
가. 수출입 요건의 개념	4
나. 수출입 요건과 비관세 조치	6
다. 관련 국제규범	8
2. 세관장 확인	15
가. 세관장 확인과 수출입 요건	15
나. 세관장 확인 규정	16
III. 세관장 확인제도 운용상 문제점	23
1. 세관장 확인대상 공고방식 관련	23
가. 공고되지 않은 수출입 요건	24
나. HSK가 연계되지 않은 수출입 요건	34
2.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는 물품 관련	50
가. 용도 비대상 물품의 악용 또는 오인	51
나. 요건면제 규정의 중복 또는 상충	59
IV.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66
1. 수출입 요건과 세관장 확인의 구분	66
2. 세관장 확인물품 공고방식의 통일	72
3. 요건 면제규정과 세관장 확인생략규정의 분리	74

참고문헌 .....	78
부록 1.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	81
부록 2.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	83
부록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	88

## 사례 목차

[사례 Ⅲ-1] 중고자동차를 등록말소하지 않고 수출한 사건 .....	31
[사례 Ⅲ-2] 목재펠릿을 규격·품질검사 없이 수입한 사건 .....	33
[사례 Ⅲ-3] 제빙기를 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사건 .....	36
[사례 Ⅲ-4] 중고복사기를 형식승인 없이 수입한 사건 .....	39
[사례 Ⅲ-5] 가상화폐 채굴기를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사건 .....	45
[사례 Ⅲ-6] 수중드론을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사건 .....	49
[사례 Ⅲ-7]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사건 .....	52
[사례 Ⅲ-8] 음악재생용 셋톱박스를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사건 .....	63

## 표 목차

〈표 II-1〉 1994년도 GATT에서 인정하는 조치 .....	10
〈표 II-2〉 세관장 확인 생략 물품 .....	21
〈표 II-3〉 세관장 확인 생략 수출입자 .....	22
〈표 III-1〉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요건 비대상 상세 사유 코드 예시 .....	54
〈표 III-2〉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 신·구 대비표 .....	56
〈표 III-3〉 세관장 확인 수입물품 법령별 수입요건 확인생략 대상 사유 코드 예시 ·	57
〈표 III-4〉 세관장 확인 수입물품 법령별 수입요건 요건면제 대상 제출서류 예시 ·	60
〈표 III-5〉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 비대상 등 상세 사유 코드 예시 .....	65

## 그림 목차

[그림 II-1] 수출입 요건의 범위 .....	5
[그림 II-2] 수출입 요건과 비관세 조치의 관계 .....	8
[그림 III-1]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물품 규정 .....	38
[그림 III-2]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의 공고방식 .....	41



# I. 서론

-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면서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관세 조치가 대두되고 있음
  - 비관세 조치란, 관세와 국경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모든 정책적 조치를 말함<sup>1)</sup>
  
- 비관세 조치는 관세 외에 상품의 교역량이나 가격을 변화시켜 무역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지만, 관세를 대신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큼<sup>2)</sup>
  - 그러나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되어 투명성을 가지며,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공식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과는 차이가 있음
  
- 비관세 조치는 국가 간 무역거래를 왜곡시키거나 수입물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WTO 체제에서 허용되고 있음
  - WTO는 차별적·부정적인 성격의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가 안전, 환경보전, 국민보건 등을 위한 비관세 조치는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비관세 조치 중 수출입 시 갖추어야 할 형식 및 절차를 수출입 요건이라 하며, 이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 국내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물품을 소관하는 법령에서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있음

---

1) 관세청, 「관세용어 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3096>, 검색일자: 2021. 12. 3.

2) 김종덕·정민철·김지현, 「한국의 비관세 조치 현황: UNCTAD 자료를 중심으로」, KIEP 기초자료 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 4.

- 이렇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통관 전에 세관장이 그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세관장 확인이라고 함
  - 수출입 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 등을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 함<sup>3)</sup>
  
-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출입 물품과 확인 방법 및 절차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sup>4)</sup>에서 HSK 10단위별로 공고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 이와 같은 세관장 확인규정상 대상물품이나 생략물품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역 또는 악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우선 HSK 10단위와 연계하여 수출입 요령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요건대상 여부 등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
  - 또한 세관장 확인의 생략과 관련하여 그 대상 또는 절차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음
  
- 세관장 확인규정은 국가안전, 환경보호, 국민보건 등을 위한 정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러한 문제 개선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관세청은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생략대상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의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입안예고하였음<sup>5)</sup>
  - 또한 수출입 신고 시 세관장 확인대상의 생략 사유를 코드로 입력하도록 하여 정확한 신고를 유도함
  
- FTA의 확산, 국제거래의 다양화 등에 따라 수출입 요건과 같은 비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함

---

3) 「관세법」 제226조

4) 이하 「세관장확인고시」

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21. 11. 23.]

- 특히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소액·자가 사용이라는 이유로 요건을 면제받거나 비대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관장 확인규정의 운용상 문제점을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제Ⅱ장에서는 세관장 확인의 의미를 유사한 개념과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관련된 국제규범 및 우리나라의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자 함
  - 제Ⅲ장은 세관장 확인과 관련된 사례를 위주로 세관장 확인제도 운용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함
  -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세관장 확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발전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II. 세관장 확인의 개념 및 의의

### 1. 수출입 요건

#### 가. 수출입 요건의 개념

- 수출입 요건이란, 관련 법령에서 물품을 수출입하는 때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이를 구비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입할 수 없음
  - 무역 및 통관 관련 법령과 수출입 물품을 소관하는 개별 법령에서 수출입 요령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라 처벌됨
  
-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따른 고시에서 물품별 수출입 요령으로 공고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은 「수출입공고」, 「전력물자 수출입고시」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 외의 각종 개별 법령에 산재한 수출입 요건은 「통합공고」, 「세관장 확인고시」에서 통합하여 공고함
  
- 특히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는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 법령의 수출입 요건을 통합하고 있으며, 대상 법령의 일부는 서로 중복됨
  -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은 수출 13개, 수입 40개, 총 42개(중복 11개)이며, 「통합공고」에 규정된 37개 법령과 「통합공고」에 고시되지 않은 5개 법령을 포함함<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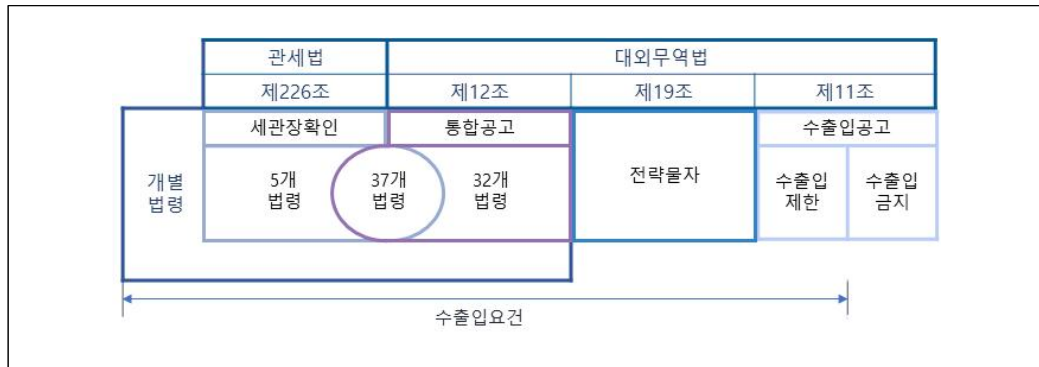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5호, 2021. 10. 8.] 기준

II. 세관장 확인의 개념 및 의의 5

- 「통합공고」는 총 69개 법령과 6개 국제협정 적용물품을<sup>7)</sup> 대상으로 하며, 「세관장 확인고시」와 37개 법령이 중복됨

- 그러나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에서 개별 법령에서 정한 모든 수출입 요건을 품목별 수출입 요령으로 공고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세관장확인고시」는 수출입 요건을 확인·증명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한 물품 중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통합공고」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출입 요령을 공고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수출입 요건은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지 않음

[그림 II-1] 수출입 요건의 범위



자료: 저자 작성

- 즉, 수출입 요건은 「세관장확인고시」, 「통합공고」,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요령이라 할 수 있음
  -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에서 정하는 물품별 수출입 요령은 수출입 요건의 일부를 구성함

7) 「통합공고」 제3조에는 64개 법령(기타 특정 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포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물품별 수출입 요령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고시  
 뿐 아니라 수출입 물품 관련 법령상의 수출입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처벌  
 뿐 아니라 「관세법」 상 부정수출입죄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복잡하고 다변하는 수출입 요건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관장확인고시」 또는 「통합공고」에 공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범칙조사나 처벌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검토 시 수출입 요건 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sup>8)</sup> 「통합공고」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

## 나. 수출입 요건과 비관세 조치

- 수출입 요건은 관세가 아닌 수출입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중의 하나이므로  
 비관세 조치이라 할 수 있음
  - 무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국제기구에서는 수출입 요건에 대한 정의  
 대신 비관세 조치에 대한 규정이나 구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비관세 조치는 기술 표준·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조치와 통상정책 수단으로 사용  
 되는 비기술적 조치로 구분됨<sup>9)</sup>
  - 기술적 조치는 기술장벽,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를  
 말함
  - 비기술적 조치는 덤핑방지·상계 관세, 긴급수입보호조치, 수출입 금지·허가, 수량  
 규제, 원산지규정,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함

8) 「통합공고」 제1조

9) UNCTA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2019*, 2019, pp. vi~vii.

- 수출입 물품을 소관하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절차 등을 공고하는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고시」의 수출입 요건은 대부분 기술적 조치에 해당함
  - 수출입 요건에는 식품 안전보장, 질병 또는 해충 전파방지 등을 위한 인증·검사·검역과 같은 조치나 환경보호,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한 기술사양·품질요구 같은 조치<sup>10)</sup>가 포함됨
  
- 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sup>11)</sup>하는 「수출입공고」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비기술적 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sup>12)</sup>
  - 일반적으로 비기술적 조치에는 종교·도덕·문화적 이유, 환경보호, 보안 등을 위한 수출입 허가가 포함됨<sup>13)</sup>
  - 「대외무역법」은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데<sup>14)</sup> 이는 비기술적 조치의 수출입 허가에 해당함
    - 현재 「수출입공고」에서는 자연보호, 수급안정,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입 제한 품목을 정하고 있음

10) UNCTAD(2019), p. viii.

11) 「대외무역법」 제11조는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출입공고」에도 수출금지품목 및 수입금지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도 수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입 요건으로 보기 어려움

12) 「대외무역법」상 수출제한과 전략물자는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UNCTAD에서는 이를 수출조치로 별도 분류하지만, 수출제한, 수출허가 등은 수출행위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기술적 조치로 분류함

13) UNCTAD(2019), p. 24.

14) 「대외무역법」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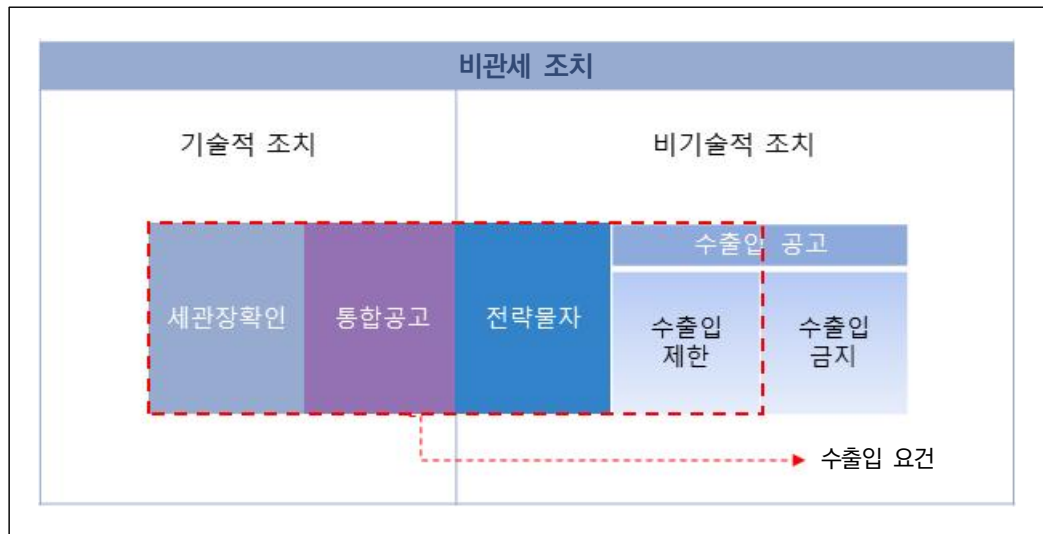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즉, 수출입 요건은 기술적 조치와 그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일부 수입 제한과 같은 비기술적 조치에 포함되기도 함
- 따라서 수출입 요건과 관련한 국제협정상 규정이나 국제기구의 입장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관세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림 11-2] 수출입 요건과 비관세 조치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 다. 관련 국제규범

- WTO 차원에서 수출입 절차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및 「무역원활화 협정」에 반영됨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은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사항을 명시함
- 또한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에서는 회원국 간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비관세 조치에 대한 규정 및 협정도 마련하고 있음

### 1) WTO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sup>15)</sup>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포함하고 있음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년도 GATT)」은 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사항을 규정함
  - 비관세 조치별 구체적인 규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등에서 정하고 있음
  
- 「1994년도 GATT」에서는 수입 및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요건은 공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체약국은 수입 및 수출 절차의 범위와 복잡성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성과 수입 및 수출의 소요서류를 감소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함<sup>16)</sup>
  - 체약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칙 등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함<sup>17)</sup>
    - 수입에 대하여 더 엄격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를 과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정식으로 공표되기 전에 실시하여서는 안 됨

15)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농업에 관한 협정」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16) 「1994년도 GATT」 제8조 제1항 (c)

17) 「1994년도 GATT」 제10조 제1항

- 또한 「1994년도 GATT」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서 <표 II-1>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허용함<sup>18)</sup>
  - 다만 예외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서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
  - 또한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면 안 됨<sup>19)</sup>
    - 계약국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계약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표 II-1> 1994년도 GATT에서 인정하는 조치

일반적 예외	안전보장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li>-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li>-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조치</li> <li>-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li>- 교도소 노동산품에 관한 조치</li> <li>-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조치</li> <li>-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li> <li>- 계약국단에 제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하는 정부 간 상품협정 또는 계약국단에 제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정부 간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하는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분열성물질 또는 이로부터 유출된 물질에 관한 조치</li> <li>- 무기, 탄약 및 전쟁기재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하여지는 기타의 물품 및 원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li> <li>-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긴급 시에 취하는 조치</li> </ul>

18) 「1994년도 GATT」 제20조

19) 「1994년도 GATT」 제21조

〈표 II-1〉의 계속

일반적 예외	안전보장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정부의 안정계획의 일부로서 국제가격보다 저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 국내 가공산업에 필수적인 수량의 원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국내원료의 수출에 제한을 과하는 조치</li> <li>- 일반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를 위하여 불가결한 조치</li> </ul>	

자료: 「1994년도 GATT」 제20조; 제21조

- 그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개별 협정에서도 「1994년도 GATT」와 같이 각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있음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기술장벽은 동일 조건하의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음<sup>20)</sup>
  - 수입허가 또한 무역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1994년도 GATT」의 원칙과 의무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sup>21)</sup>
  
- 한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서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함<sup>22)</sup>
  -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다음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말함<sup>23)</sup>
    - 병해충, 질병매개체,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식품, 음료,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20)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전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전문

21)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전문

2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2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제1항

- 동물, 식물 또는 동물·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명, 건강의 보호
-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 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함<sup>24)</sup>
  -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 절차
  - 동물,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 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 표본추출 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과 적합판정제도가 생산 능률을 향상하고 국제무역의 수행을 원활하게 한다고 명시함<sup>25)</sup>
  - 이러한 목적을 위한 기술규정, 표준,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다음을 말함<sup>26)</sup>
    - 기술규정은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말함
    - 표준이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간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를 뜻함
    - 적합판정 절차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함
- 또한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은 국제무역 흐름이 수입허가 절차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sup>27)</sup>

2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제1항

2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전문

2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제1항 내지 제3항

- 수입허가란, 수입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관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임<sup>28)</sup>
- 수입허가는 신청에 대한 모든 경우 승인이 부여되는 자동수입허가와 이를 제외한 수입 허가절차인 비자동수입허가로 구분됨
  - 자동허가 절차는 수입품에 대한 규제효과를 갖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며, 비자동허가는 제한의 부과로 야기되는 효과 외에 무역제한 또는 왜곡효과를 갖지 않음<sup>29)</sup>

## 2) WTO 무역원활화 협정

-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 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에 대한 국제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위하여 2013년 타결되고, 2017년 정식발효됨<sup>30)</sup>
  - 그러나 무역원활화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은 물품 무역위원회에서 관할하며 다른 협정과 중복되지 않은 분야로 대상을 제한함
-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정」은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5조, 제8조, 제10조를 명확화하고 개선함<sup>31)</sup>
  - 특히 「1994년도 GATT」 제8조와 제10조는 수출입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공표 규정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도 수출입 요건과 관련한 회원국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해서 수출 및 수입통관 등 국경 절차에 대한 규정의 공개가 중요하다고 보고 회원국이 공표해야 할 정보를 열거함<sup>32)</sup>
  - 각 회원국은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함<sup>33)</sup>

27)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전문

28)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제1조 제1항

29)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제2조 내지 제3조

30) 관세청,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2014, p. 11.

31) 「무역원활화 협정」 전문

32) 관세청(2014), p. 45.

33) 「무역원활화 협정」 제1조

-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 그리고 요구 형식 및 서류
  -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제한 또는 금지
  -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 또한 「무역원활화 협정」은 관세 관련 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한 세관 당국이 부과하는 처벌을 위반의 자진신고 시 경감하도록 장려함<sup>34)</sup>
- 개인이 관세당국에 의한 적발 이전에 위반사항을 관세당국에 밝히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이 사실을 잠재적 경감요소로 고려하도록 장려됨
- 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절차와 서류의 간소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음<sup>35)</sup>
- 수입, 수출 및 통과 형식의 횟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 서류 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기 위해 그 형식과 요건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함<sup>36)</sup>
- 상품, 특히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위해 채택 또는 적용됨
  - 무역업자와 영업자의 준수시간 및 비용 감축을 위해 채택 또는 적용됨
  -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적 조치가 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가장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선택됨
  -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 요구되지 않음
- 한편 무역원활화를 위해서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 등 관련되는 국경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
- 회원국은 국경통제 및 상품의 수입·수출·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책임지는 당국 및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함<sup>37)</sup>

---

34) 「무역원활화 협정」 제3조

35) 관세청(2014), p. 158.

36) 「무역원활화 협정」 제10조

37) 「무역원활화 협정」 제8조 제1항

- 궁극적으로 회원국은 수출입자가 다양한 국경기관에서 여러 국경절차 이행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통관단일창구를 마련해야 함<sup>38)</sup>
- 회원국은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입, 수출, 통과를 위한 서류 및 자료요건을 단일접수 지점을 통해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를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노력함<sup>39)</sup>
- 서류 및 자료가 통관단일창구에 접수된 경우 동일한 서류 및 자료는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 요구되지 않음
  - 다만 긴급한 상황 및 공표된 그 밖의 제한된 예외의 경우는 제외함

## 2. 세관장 확인

### 가. 세관장 확인과 수출입 요건

- 세관장 확인은 물품을 수출입할 때 갖추어야 할 허가·승인·표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제도임
- 따라서 세관장 확인대상은 수출입 요건의 준수를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으면 통관을 할 수 없도록 별도로 지정된 물품을 말함
- 관세청장은 수출입 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물품을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함<sup>40)</sup>
- 세관장 확인대상은 수출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 중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통해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 이러한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관련 무역질서 유지, 관세행정의 효율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sup>41)</sup>

38) 관세청(2014), pp. 168~169.

39) 「무역원활화 협정」 제4조

40) 관세청, 『세관장 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 2020, p. 3.

- 수출입자가 자발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무역질서를 유지하며, 무지 또는 단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규위반자의 발생을 방지함
  - 또한 의무사항을 모든 요건확인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세관장이 대행함으로써 행정인력·비용·시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 세관장 확인과 관련한 사항은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법령, 「통합공고」, 「수출입공고」 등과 함께 수출입 요건을 구성함
- 세관장 확인물품은 수출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의 일부분으로 2022년 1월 현재 HSK 10단위 기준 총 6,0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sup>42)</sup>
- 즉, 개별 법령에서 수출입 시 구비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물품이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 되는 것은 아님<sup>43)</sup>
- 수출입 물품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결정된 후 「세관장확인고시」로 공고되면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구비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발생함

## 나. 세관장 확인 규정

-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이를 세관장에게 증명하도록 함<sup>44)</sup>
- 이러한 물품을 수출입 하려면 허가·승인 등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sup>45)</sup>
  - 수출입 신고 시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46)</sup>

41) 관세청(2020), p. 4.

4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기준

43) 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노1823 판결

44) 「관세법」 제226조 제1항

45)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 제1항

-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해야 함<sup>47)</sup>
  - 다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sup>48)</sup>
  
-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신청을 통관포털 이용 또는 서면 등으로 직접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음<sup>49)</sup>
  -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통관포털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함<sup>50)</sup>
  
- 또한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됨<sup>51)</sup>
  - 수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즉,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수출입자의 의무이며, 수출입 시 이러한 요건을 신청하고 수출입 신고해야 함
  - 이를 구비하지 않고 수출입하거나 관련 사항을 수출입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
  
- 한편, 통관 시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함<sup>52)</sup>

46)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47)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2항

48) 「관세법」 제245조 제2항

49)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

50)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는 부록 1 참조

51)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내지 제3항

52) 「관세법」 제226조 제2항

- 세관장 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sup>53)</sup>
- 이러한 「관세법」 규정에 따라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함<sup>54)</sup>
  - 허가·승인 등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함<sup>55)</sup>
- 세관장에게 통관 시 수출입물품의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대상물품·대상물품별 HSK 10단위 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sup>56)</sup>
  -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요청내용·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전산망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함
-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sup>57)</sup>과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별 수출입 요건을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함<sup>58)</sup>
  -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 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 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함<sup>59)</sup>
  -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에 통보된 수출입 요건 확인내역을 조회하여 세관장 확인을 해야 하며, 요건확인 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서류로 세관장 확인을 할 수 있음<sup>60)</sup>

5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 제2호

5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1조

55)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5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8조

57) 대상 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은 부록 2 참조

58)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1항, 별표 1 내지 2

59)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9조 제1항

60)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9조 제2항

- 세관장 확인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은 수출입 신고 시 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sup>61)</sup>

□ 그러나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출입물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sup>62)</sup>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 제외), 다만 다음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물방역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정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함)
  - 「통신비밀보호법」
  -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6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

6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다만, 다음 각 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함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식물방역법」
  -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곡관리법」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전자원법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 「폐기물 관리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위생용품 관리법」
  - 「생활화학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 우수기업 등 세관장 확인 생략 대상 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함

〈표 II-2〉 세관장 확인 생략 물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sup>1)</sup>	「통합공고」 제12조에 따른 요건면제물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등</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등</li> <li>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li> <li>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li> <li>라. 무상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li> <li>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등</li> <li>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li> <li>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li> </ol> </li> <li>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li> <li>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li> <li>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 수출물품, 선(기)용품</li> <li>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li>4.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ol>

주: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부록 3 참조  
 자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통합공고」 제12조

〈표 II-3〉 세관장 확인 생략 수출입자

대상 법령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li> <li>-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li> <li>-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li> </ul>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li> <li>-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li> <li>-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li> </ul>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li> <li>-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li> <li>-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li> </ul>
「화학물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li> <li>-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li> </ul>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li> </ul>

자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5

### Ⅲ. 세관장 확인제도 운용상 문제점

#### 1. 세관장 확인대상 공고방식 관련

-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관장은 이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
  -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 등의 구비를 세관장에게 증명하도록 함<sup>63)</sup>
  
- 다만, 구비조건 중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미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sup>64)</sup> 공고된 물품에 대한 조건 확인을 세관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수출입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세관장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출입 물품 및 확인사항을 별표로 고시하고 있음
  - 별표 1, 2에서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 물품의 ①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 요건, ② 물품별 수출입 요건을 열거함
  - 특히 물품별 수출입 요건은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입 요건을 명시함<sup>65)</sup>

63) 「관세법」 제226조 제1항

64) 「관세법」 제226조 제2항

65) 물품별 수출입 요건은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으로 구성되지만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요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요건에 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함

## 가. 공고되지 않은 수출입 요건

- 「관세법」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자가 구비를 증빙해야 할 의무인 수출입 요건의 범위와 세관장의 의무인 확인범위가 상이함
  -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자에게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세관장에게 공고된 물품에 대한 확인을 규정함
- 이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와 관련한 수출입자의 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개별 법령에는 수출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경우 수출입 신고방법이나 처벌에 대한 다툼이 있음

### 1) 세관장의 권한

-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은 법 제226조와 관련하여 ① 수출입을 할 때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구비·증명해야 하는 물품과 ② 세관장 확인물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구비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26조 제1항에 규정된 물품을 말하며, 세관장 확인물품이란 제2항에 따른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우선 ①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구비·증명이 필요한 물품이란 표현은 수출입 신고 시 신고서의 항목, 제출서류, 요건신청, 부정수출입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음
  - 수출입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sup>66)</sup>
    - 다만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이를 확인한 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신고수리 후 제출하게 할 수 있음<sup>67)</sup>

66) 「관세법」 제24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2항

67) 「관세법」 제245조 제2항

-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요건신청을 한 구비서류, 즉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물품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sup>68)</sup>
  -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등을 신고해야 함<sup>69)</sup>
  -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통관포털을 이용하거나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요건신청을 할 수 있음<sup>70)</sup>
  - 수출입 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입한 자는 처벌함<sup>71)</sup>
- 반면 ②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은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수입신고 서류 제출 대상 선별기준,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에 언급되어 있음
-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세관장확인고시」 별표에서 공고함<sup>72)</sup>
  - 수입신고는 P/L신고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함<sup>73)</sup>
  - 수출신고인은 「관세법」 제226조와 「세관장확인고시」의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규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별 법령별 요건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74)</sup>
- 그러나 규정에서 동일한 문구로 적용대상을 명시한 수출입자의 신고의무와 부정수출입 죄를 실무적으로는 각각 다른 범위로 적용하고 있음

68)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제6호

69) 「관세법」 제241조;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 제1항 제3호

70)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

71)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내지 제3항

7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1항

7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5호

7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

- 즉, ‘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갖춘’과 같이 명시된 규정을 세관장 확인물품에만 적용하기도 하고, 세관장 확인물품이 아닌 물품에 적용하기도 함
- 법령상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은 증명서류를 신고·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해 신고의무가 이행되고 있음
  - 수출입 신고서에 증명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수입 서류제출 선별 시<sup>75)</sup>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실제로는 「세관장확인고시」에 공고된 물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 다만 요건확인기관은 관세청과 전산망으로 연계된 경우 수출입 요건 확인내역을 통보하므로 공고되지 않은 물품의 증명서류도 통관시스템에 접수됨
    - 따라서 수입자가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만 고시로 공고된 물품, 즉 세관장확인 물품에 대하여 서류제출이 이루어짐
- 이와는 다르게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부정수출입죄의 처벌은 「세관장 확인고시」에 공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이루어지고 있음
  - 판례에서는 「세관장확인고시」로 공고되었는지 여부가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sup>76)</sup>
  - 또한 「세관장확인고시」에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음<sup>77)</sup>
  - 이에 따라 고시로 공고되지 않은 물품이 수출입 허가·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라도 「관세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처럼 실무에서는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구비·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75) 반면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서 「세관장확인고시」에 공고된 물품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76) 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노1823 판결

7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 판례에서는 「관세법」 제270조의 부정수입죄와 제226조의 허가·승인 등의 증명에서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두 조항에서 정한 ‘구비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sup>78)</sup>
  
- 이와 같이 수출입 허가·승인 등의 구비·증명이 필요하다는 각 규정을 하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수출입 신고 의무와 관련된 실무 관행과 같이 고시에 공고된 물품으로 불지, 부정수출입죄의 판례처럼 고시에 공고되지 않은 물품도 포함할지 검토해야 함
  
- 이는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구비·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세관장 확인물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수출입 요건에 대한 세관장의 권한이 달라짐
  - 즉, 수출입자가 수출입 시 구비해야 하지만 세관장의 확인의무가 없는 요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해당 허가·승인 등을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결정됨
  
- 수출입 허가·승인 등의 구비 등이 필요한 물품을 고시물품으로 한정하는 경우 수출입자의 의무와 그 처벌도 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세관장의 권한이 축소됨
  - 증명서류 명칭의 수출입 신고, 요건신청, 서류제출 등의 대상은 공고물품으로 한정되며, 부정수출입죄에 대한 처벌도 공고된 요령에 대한 위반 시에만 가능함
  - 따라서 세관장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 의무위반에 대한 고발과 같은 권한은 공고물품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음
  
- 반면, 수출입 허가·승인 등의 구비·증명이 필요한 물품의 범위를 세관장 확인물품보다 넓게 인정하면 수출입자의 의무이행 확인, 그 처벌에 대한 세관장의 권한 또한 확대됨
  - 증명서류 명칭의 수출입 신고, 요건신청, 부정수출입죄의 처벌은 「세관장확인고시」에 공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 또한 허가·승인 등이 필요하지만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의 수출입 신고서에 증명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됨

78) 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노1823 판결

- 다만, 수입물품의 서류제출 대상 선별과 수출물품의 서류제출 규정은 공고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됨
  - 수입신고 중 서류제출 대상 건에 대한 제출서류는 요건신청 규정에 의한 서류이므로 공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수출입 요건 구비·증명물품과 세관장 확인물품의 해석범위에 따라 수출입자의 의무와 세관장의 권한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대한 해석과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와 관련한 세관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과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관세조사<sup>79)</sup> 심사분야에 포함된 사항은 세관장의 권한이 있음을 의미함
  - 관세조사란,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인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임<sup>80)</sup>
  
- 관세조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는 심사분야에 세관장 확인물품뿐 아니라 수출입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 심사분야에는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포함됨<sup>81)</sup>
  - 또한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에서 통관요건과 관련하여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기타 개별 법령 관련 신고·허가·승인내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sup>82)</sup>
  
- 즉, 관세조사 관련 규정에서는 세관장의 권한을 세관장 확인대상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요건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함

---

79) 「관세법」 제110조의2

80)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81)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제1항

8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1

-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수출입 시 승인·허가 등의 구비·증빙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 확인물품과 별도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판례에서도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공고되지 않아 세관장의 확인의무가 없다고 하여 확인권한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sup>83)</sup>
  - 따라서 세관장은 확인대상으로 공고되지 아니한 물품도 구비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세관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규정과 판례 모두 수출입 시 승인·허가 등의 구비·증빙이 필요한 물품을 세관장 확인물품과 다르게 보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따른 수출입 요건은 주무부장관이 구비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임<sup>84)</sup>
- 즉, 수출입 시 승인·허가 등의 구비·증빙이 필요한 물품은 수출입 요건대상 물품이라 볼 수 있고, 세관장 확인물품은 수출입 요건의 일부를 구성함
  - 세관장은 수출입 요건대상 물품의 요건을 확인할 권한이 있고, 그중에서 세관장 확인물품의 요건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수출입 신고서 항목, 요건신청, 부정수출입죄 등의 규정은 세관장 확인물품이 아닌 수출입 요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실무적으로 수출입 신고 시 세관장 확인물품만 그 증명서류를 기재·제출하는 것은 수출입자가 「관세법」 제226조를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한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관세법」 제226조는 제1항에서 수출입 요건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세관장의 권한을, 제2항에서 이러한 증명 중 일부를 확인할 세관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구분해야 함

83) 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노1823 판결

84) 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노1823 판결

## 2) 법령의 범위

- 수출입자는 수출입 시 법령에 따라 승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신고·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됨<sup>85)</sup>
  - 법령에 따라 필요한 승인·허가 등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을 수출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죄에 해당됨
  - 또한 법령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춘 경우 부정수출입죄로 처벌됨
  
-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승인·허가 등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요건이라고 통용되지만, 해당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옴
  - 수출입 요건이란 「세관장확인고시」, 「통합공고」, 「수출입공고」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구비조건이므로 법령에 이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함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중고차를 말소등록 절차 없이 수출한 사건에서 「세관장확인고시」 대상이 아니지만 「통합공고」에 고시된 요건이므로 부정수출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함<sup>86)</sup>
  -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통합공고」에 수출요령으로 고시됨
  - 「세관장확인고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출요건이 1999년에 포함되었으나 2000년에 삭제되어 사건 수출 당시 세관장의 확인의무는 없음
    - 「자동차관리법」 해당 물품 중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말소 확인확인서<sup>87)</sup>가 필요했으나 해당 법령 및 물품은 2000년에 삭제됨<sup>88)</sup>

85) 수출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함

8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87)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1999-12호, 1999. 4. 1.) 별표 1의 가

88)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3호, 2000. 10. 23.) 별표 1의 가

-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포함되며, 「통합공고」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봄<sup>89)</sup>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 및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됨
  -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함
    - 수출 중고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요구하는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5조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

[사례 Ⅲ-1] 중고자동차를 등록말소하지 않고 수출한 사건

- 사건개요: 자동차 수출입 및 도소매 법인이 2002년 2월~12월 18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75대를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출하여 인천세관을 통해 통관함
- 처벌: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 절차와 세관의 수출심사 절차가 필요 없는 신조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에 처함
- 사건결과: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2120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상고 기각
- 판결요지: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 및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15조에 의한 「통합공고」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됨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규 수범자로서는 대외무역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5조 및 이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의 규정을 종합하여 「통합공고」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및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3]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지 여부, 세관 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 물품의 통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자료: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8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 또한 대법원은 목재펠릿을 규격·품질검사 없이 수입한 사건에서 해당 요건이 「통합공고」에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sup>90)</sup>
  - 해당 사건의 목재펠릿이 수입될 당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sup>91)</sup>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함<sup>92)</sup>
  - 그러나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에 해당 구비조건이 공고되지 않음
    - 「통합공고」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수입요령이 2014년에 추가됨<sup>93)</sup>
    - 「세관장확인고시」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 목재펠릿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여 2018년 「목재이용법」이 적용 법령으로 신설됨<sup>94)</sup>
  
- 대법원은 수입 시 구비조건이 「통합공고」로 공고되지 않음을 신뢰하고 행동한 자를 부정수입죄로 처벌한다면 수출입 절차를 공고하도록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함<sup>95)</sup>
  -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합공고」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복잡하고 다변하는 각종의 수출입규제를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구비조건이 관세법령, 대외무역법령 등에 규정된 방법 중 특히 「통합공고」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sup>96)</sup>
  - 관세법령, 대외무역법령 등에 규정된 방법에는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이 해당됨

9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 10038 판결

91) 이하 「목재이용법」

9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3)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5호, 2014. 10. 10.) 제195조, 별표 2

9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관세청 공고 제2018-28호, 2018.3. 16.)

9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 10038 판결

96)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 10038 판결

[사례 Ⅲ-2] 목재펠릿을 규격·품질검사 없이 수입한 사건

- 사건개요: 해외에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가 2014년 1월~6월 33회에 걸쳐 목재펠릿 5,604,198kg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광양세관에서 통관함
- 처벌: 「목재이용법」에서 규정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벌금 7백만원에 처한 반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위반은 무죄로 판단함
- 사건결과: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노1823 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상고 기각
- 판단: [1] 「세관장확인고시」로 공고되면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구비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발생하며, 수입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확인고시」로 공고되었는지 여부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움  
 [2] 「대외무역법」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합공고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복잡하고 다변하는 각종의 수출입규제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수입시의 구비조건에 관하여 「통합공고」로 공고되지 않았고 그 공고되지 않음을 신뢰하고 행동한 자를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 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한다면 위와 같이 공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어긋남  
 [3] 따라서 피고인이 통합공고를 통해 공고되지 않은 구「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한 경우, 이에 대하여 「목재이용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음

자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 10038 판결

- 판례는 「세관장확인고시」 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수출입죄를 판단하였으나 이를 ‘법령’의 범위에 「세관장확인고시」가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법령의 범위에서 「세관장확인고시」를 제외한다면 「통합공고」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세관장확인고시」에서는 규정된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정수입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됨
    -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고 명시함
- 「세관장확인고시」가 부정수입죄로 처벌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판단은 공고되지 않은 물품도 처벌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일 뿐임
  - 또한 같은 판례에서 부정수입죄에 대한 처벌 여부는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따른다고 언급함

- 따라서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관세법」 제270조의 ‘법령’에는 「세관장확인고시」뿐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따른 고시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수출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대외무역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
- 이와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226조의 ‘법령’ 또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을 공고하는 규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수출입자는 「세관장확인고시」에 공고되지 않았더라도 「통합공고」 등에 의한 수출입 요건에 대한 수출입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그러나 실무적으로 「관세법」 제226조상의 ‘법령’을 「세관장확인고시」로만 해석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정비의 검토가 필요함
  - 제226조를 준용하는 규정에 있어 제1항의 허가·승인 등의 구비·조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인지 제2항의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함

#### 나. HSK가 연계되지 않은 수출입 요건

- 「세관장확인고시」는 세관장 확인물품을 ①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② 7물품별 수출입 요건으로 구분하여 공고하고 있음
  -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별표 1 및 2는 ‘가.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별 구비요건’과 ‘나. HSK 10단위별 수출입 요건’으로 구성됨
-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공고되었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가목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이지만 나목의 HSK 10단위별 수출입 요건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1)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의 관계

- 수출입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대상을 물품으로만 명시하고 품목명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히 일어남
  - 예를 들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sup>97)</sup>에 따른 검사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식품, 축산물로 이는 구체적인 품목명이 아님
  
- 이러한 경우 수출입 요건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모든 HSK 10단위를 연계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HSK 10단위별 수출입 요건에서 누락되기도 함
  - 수출입자가 이렇게 누락된 HSK 10단위의 수출입 요건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출입 신고 시 이를 구비하지 않기도 함
  
- 이러한 사례로 관세청은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제빙기를 수입한 업체를 「수입식품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음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함<sup>98)</sup>
  - 누구든지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됨<sup>99)</sup>
  
- 이에 피의업체들은 「통합공고」에 제빙기의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법」이 공고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검찰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함
  - 제빙기가 분류되는 제8418호의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은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와 안전인증만이 기재됨<sup>100)</sup>

97) 이하 「수입식품법」

9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99) 「식품위생법」 제4조

100)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 2020. 12. 10. 시행 이전의 것)

- 2020년 12월 10일 개정에서 별표 2 수입요령에 제8418호의 적용법령과 수입요령으로 「수입식품법」이 추가됨

- 검찰은 또한 불기소의 이유로 현행 「수입식품법」이 제빙기의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도 불기소 이유로 언급함<sup>101)</sup>
-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항 마목에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함

### [사례 Ⅲ-3] 제빙기를 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사건

- 사건개요: 롯데칠성음료, 오진양행 등의 16개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식품용 제빙기 등 113,685점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유통함
- 경과: 관세청과 식약처는 「수입식품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결정함
- 불기소 이유: [1] 「수입식품법」에서는 신고대상인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항 마목에서는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부속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빙기가 위 별표 9에 해당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통합공고」를 비롯한 다른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제빙기에 대한 「통합공고」는 「전파법」상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는 뜨거운 음료 제조용 기구에 대한 「통합공고」에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대비됨  
[3] 그리고 이 사건 제빙기 신고 담당 관세사도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안내를 하였고, 「통합공고」에 기재된 다른 신고는 모두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로 피의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3] 따라서 피의자에게 이 사건 미신고 제빙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 행정처분: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미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조치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함

자료: 관세청·식약처, 「미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송치」, 보도자료, 2020. 11. 27.; 김연지(2020. 12. 29.); 박효주, 「신고대상 안내 없었는데...롯데칠성·롯데알미늄 제빙기 행정처분에 속았어」, 『전자신문』, 2021. 8. 12., <https://m.etnews.com/20210812000062>, 검색일자: 2022. 2. 8.

101) 김연지, 「미신고 수입 제빙기 업체 고발에도 檢은 무혐의」, 『노컷뉴스』, 2020. 12. 29., <https://www.nocutnews.co.kr/news/5472180>, 검색일자: 2022. 2. 8.

- 해당 사례에서 검찰은 「수입식품법」과 「식품위생법」이 「통합공고」 제3조의 적용법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빙기에 대한 수입요령이 공고되지 않았다고 봄
  - 「통합공고」 제3조 제4호 및 제59호에 따라 제3절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수입 요령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별표 2의 HSK 10단위와 연계된 수입요령에서 제8418호에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요령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빙기를 미공고 물품으로 봄
  
- 이를 근거로 「세관장확인고시」상 대상 법령 또한 HSK 10단위와 연계된 수출입 요건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고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음
  - 「세관장확인고시」에서도 「수입식품법」과 「식품위생법」<sup>102)</sup>은 대상 법령이었으나 제8418호의 수입요령에는 해당 법령이 연계되지 않았음<sup>103)</sup>
    - 「세관장확인고시」 또한 해당 사건을 계기로 2022년에 별표 2 '나. 물품별 수입 요건'의 제8418.69호에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추가함<sup>104)</sup>
  
- 그러나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고시」의 적용대상 규정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사례를 「세관장확인고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고시」 모두 적용 법령과 HSK 10단위가 연계된 품목별 수출입 요건을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한 각 조항의 관계가 다름
  
- 「통합공고」는 제3조에서 적용법령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 제3조 법령의 적용을 받는 수출입 물품은 별표 1 및 2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즉, 「통합공고」의 대상물품은 적용법령에서 규정하는 모든 물품이 아니라 별표 1 및 2에서 정한 물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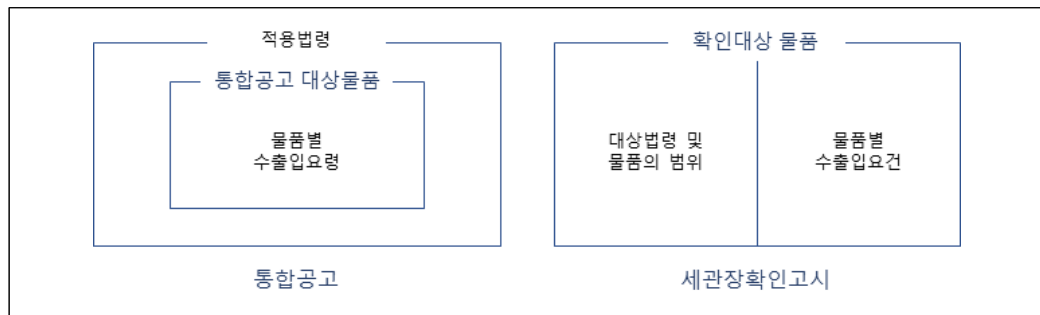
10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6호, 2017. 1. 1. 시행 이전의 것)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통합됨)

10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시행 이전의 것)

10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 반면 「세관장확인고시」는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대상 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은 별표 1 및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05)</sup>
  - 「통합공고」와는 달리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중 물품별 수출입 요건을 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즉, 세관장 확인물품은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 따른 물품만이 아니라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공고하고 있는 물품으로 구성됨

[그림 Ⅲ-1]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물품 규정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는 세관장 확인대상에 대한 일반 규정이고, 물품별 수출입 요건은 그 구체적 목록이라 할 수 있음
  - 물품별 수출입 요건은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를 HSK와 연계된 물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등하게 세관장 확인대상을 구성함
- 이와 관련하여 「세관장확인고시」 별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 대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수출입 요건 공고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음
  -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제외된 물품을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10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 판례는 중고복사기를 수입하면서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사건에서 중고복사기가 세관장 확인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sup>106)</sup>
  - 당시 「세관장확인고시」의 별표 2 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물품을 가정용 전기용품으로 한정하여 개정 고시함<sup>107)</sup>
- 이에 법원은 가정용이 아닌 중고복사기는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sup>108)</sup>
  - 가정용 전기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복사기는 1999년 4월 1일부터 그 이전과는 달리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서 제외되었음이 분명한

[사례 Ⅲ-4] 중고복사기를 형식승인 없이 수입한 사건

- 
- 사건개요: A는 싱가포르 회사로부터 일본제 중고복사기 542대를 19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용당세관에서 통관하여 시중에 판매함
  - 사건결과: 피고인과 검사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00. 10. 9. 선고 2000고합 604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함
  - 처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에 처한 반면, 구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위반은 무죄로 판단함
  - 판단: [1] 「세관장확인고시」 제3조 제1항 별표 2(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의하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중 가정용 전기제품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의 형식승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중고복사기는 1999. 4. 1.부터 그 이전과는 달리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서 제외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통관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조건 확인절차에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 구 「대외무역법」 제180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145조 제1항에 대응한 처벌규정으로서 수입조건을 사위 기타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비하여 위반하는 자뿐만 아니라 통관에 필요한 수입조건 자체를 아예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입을 하여 동 조항을 위반하는 자를 함께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3] 따라서 통관절차에서 세관장의 수입조건 확인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제외된 물품의 경우에는 다른 개별 법령에서 그 수입에 관련 행정청의 허가·승인·추천 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를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구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수입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자료: 부산고등법원 2001. 4. 12. 선고 2000노998 판결

106) 부산고등법원 2001. 4. 12. 선고 2000노998 판결

107)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1999-12호, 1999. 4. 1.) 별표 2. 가. (11)

108) 부산고등법원 2001. 4. 12. 선고 2000노998 판결

- 이와 같이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는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단순히 누락된 물품은 「세관장확인고시」에 공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누락 또는 제외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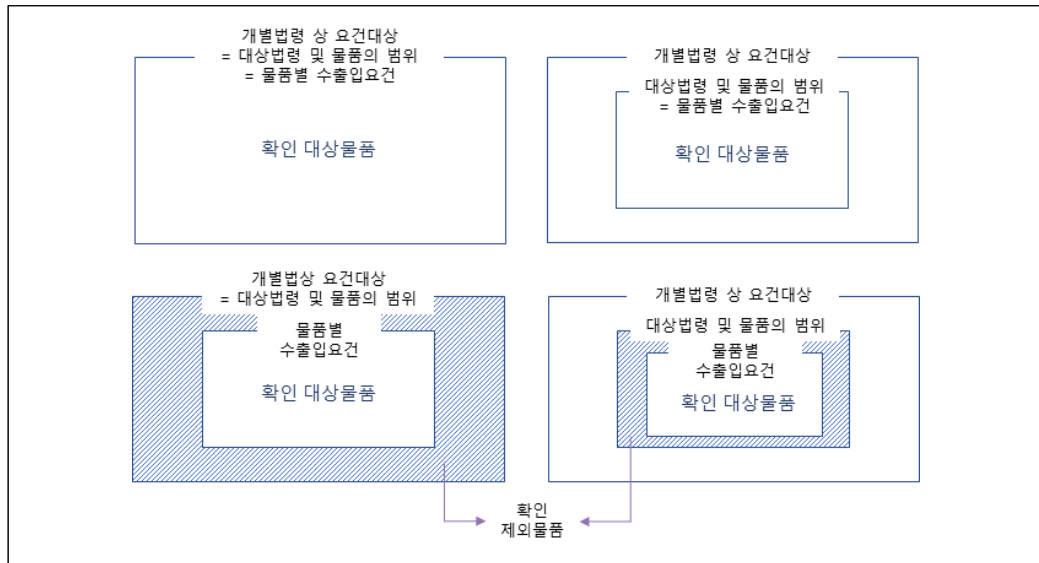
-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가 정하고 있는 모든 물품을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포함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가령 「수입식품법」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로 물품별 수입요건에서 제외하는 품목은 없음
- 즉,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수출입 요건과 그 대상을 공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므로 그 방식별로 세관장 확인물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중 일부 품목만이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토가 필요함
- 먼저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의 물품이 일치하는 경우로 개별 법령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①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요건과 대상 모두를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sup>109)</sup>의 물품의 범위는 법령 해당 물품으로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 「마약류관리법」 해당 물품인 마약류를 전부 포함함
  - ②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요건과 대상 중 일부를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목재이용법」의 적용대상은 목재 등 총 7품목이지만<sup>110)</sup> 「세관장확인고시」에서는 목재, 목재제품,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만을 공고하고 있음

109) 이하 「마약류관리법」

110)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수입신고를 하고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의 15개 품목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를 목재, 목재제품으로 통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이를 2품목으로 집계함

-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물품과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 따른 물품이 상이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③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요건과 대상 모두를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포함하지만 그중의 일부만 물품별 수출입 요건으로 공고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의 범위는 법령 해당 물품이지만 물품별 수입요건에는 13품목 중 비자동저울만 공고함<sup>111)</sup>
  - ④ 개별 법령의 수출입 요건과 대상 중 일부만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공고하고 또 그중의 일부만을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HSK 10단위를 연계한 경우
    - 실제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이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유형임

[그림 Ⅲ-2]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의 공고방식



자료: 저자 작성

11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비자동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등 13개 품목임(「계량에 관한 법률」 별표 7)

- 이와 같은 세관장 확인물품 공고방식 중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의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①, ②) HSK 10단위가 연계되지 않은 물품은 단순한 공고 누락이라고 볼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세관장 확인의무를 의도했지만 품목분류의 오류 등으로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누락된 것임
  - 따라서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규정에 따라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함
- 반면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④) HSK 10단위가 연계되지 않은 물품은 누락과 제외를 판단하기 어려움
  -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물품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HSK가 연계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단순히 누락된 것인지 혹은 제외된 것인지 알 수 없음
  - 단순한 누락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해당 물품을 제외한 경우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인 비자동저울이 물품별 수입 요건상 HSK 10단위와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음
  - 수입자가 비자동저울이 분류되는 다른 호에 대한 수입요건이 단순히 누락된 것인지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이 경우 「세관장확인고시」의 규정상 수입자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중 HSK 10단위와 연계된 일부 품목만 세관장 확인대상임을 인식하기도 쉽지 않음
  -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입요령에서 공고된 HSK 10단위의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며 확인해야 함
  - 그러나 수입자는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규정의 확인 없이 물품별 수입요건만을 보고 세관장 확인이 필요 없는 물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또한 대조작업을 통해 일부 품목만이 세관장 확인대상임을 확인한 경우라도 HSK 10단위가 연계되지 않은 물품을 모두 세관장 확인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음

- 단순누락으로 HSK 10단위가 연계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를 물품별 수입요령에 의도적으로 공고하지 않은 확인 제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즉, 비자동저울이 분류되는 다른 호도 HSK 10단위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분동, 가스 미터 등의 품목처럼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 특히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제품은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 누락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이러한 점이 수출입 요건 회피에 악용될 수 있음
  - 신제품의 품목분류가 정해지지 않아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 HSK를 연계할 수 없어 누락된 것을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관세청은 2018년 기획단속을 통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가상화폐 채굴기를 적발함<sup>112)</sup>
  - 가상화폐 채굴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중 컴퓨터 주변기기류에 해당하여 적합등록이 필요함<sup>113)</sup>
    - 가상화폐 채굴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임
  
- 단속된 가상화폐 채굴기가 수입된 2017년에는 「세관장확인고시」상 채굴기가 분류 되는 호의 물품별 수입요령 대상물품에 컴퓨터 주변기기는 공고되지 않음<sup>114)</sup>
  - 가상화폐 채굴기는 제8543.70-9090호에 분류되는데, 2017년 해당 호의 「전파법」상 세관장 확인물품은 기포발생기, 전격살충기, 초음파세척기 등이었음
  
- 반면,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는 「전파법」 해당 물품 중 적합성평가 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 기자재가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112) 관세청, 「화재유발 부정 수입물품 기획단속», 보도자료, 2018. 1. 22.

11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자목 34)

11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 4. 19. 시행 이전의 것)

- 컴퓨터 주변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이므로 가상화폐 채굴기는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 따르면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임
- 이 경우 수입자가 가상화폐 채굴기의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를 대상물품의 범위에 따라야 하는지 혹은 물품별 수입요건에 따라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물품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모든 물품이 HSK 10단위와 연계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움
- 더욱이 HSK 10단위와 연계된 「전파법」상 수입요건은 그 대상품목을 열거하는 경우와 대상의 범위만 규정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음
  - 가령 제8517호의 통신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 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함
  - 반면, 자동자료처리기기가 분류되는 제8471호에는 「전파법」상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은 컴퓨터라고 대상품목을 명시함
- 이러한 까닭으로 「전파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이 모든 적합성평가 대상 물품인지, 일부 HSK 10단위가 연계된 물품인지 수입자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수입자가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하는 때에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요건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수입자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을 확인하지 않는 한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하는 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특히 「세관장확인고시」 물품의 범위에 따라 가상화폐 채굴기를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본다면 수입자가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
-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 4월 「세관장확인고시」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대상 물품으로 추가 지정함<sup>115)</sup>

11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 4. 19. 시행)

- 가상화폐 채굴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090호의 물품별 수입요령에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에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를 추가함
- 그러나 개정고시는 컴퓨터 주변기기가 아닌 가상화폐 채굴기라고 공고함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유형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알 수 없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컴퓨터 주변기기는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적합등록이 필요함<sup>116)</sup>

[사례 Ⅲ-5] 가상화폐 채굴기를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사건

- 사건개요: 2017년 11~12월 관세청은 기획심사를 통해 「전파법」에 따른 요건 없이 수입한 454개의 가상화폐 채굴기를 적발
  - 관련 규정
    - 「세관장확인고시」 별표 2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 가.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3) 「전파법」 해당 물품 (가) 적합성평가 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li> <li>○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 (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li> </ul>

나. 물품별 수입요건

-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 4. 19. 시행 이전의 것)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	관계법령
8543.70-9090	기타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기포발생기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에어커튼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기타 전기세척기 •컴프레서 •팬코일유닛 •폐열회수환기장치 •전동형롤스크린 •전기헬스기구 •편집기 •오디오프로세서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프로세서 •전자악기 •영상전송기 •공기청정기 •전자시계 •컴프레서 게이트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전기소자기 •비디오 카메라 •튜너 •리시버 •위성방송수신기 •CCTV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입체 영상기(OHP) •전기주류성숙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작동 도어록 •전기시계 •전기분수기 •착유기 •전격 살충기 •공기청정기	전파법

11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자목 34)

[사례 III-5]의 계속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 4. 19. 시행)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	관계법령
8543.70-9090	기타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생략) •공기청정기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	전파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34) 컴퓨터 주변기기류 [입력장치(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컨트롤러류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						○	

자료: 관세청(2018. 1. 2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이와 유사하게 관세청은 2018년 가상화폐 채굴기와 함께 드론을 「전파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추가지정하였음<sup>117)</sup>

○ 완구용 드론이 분류되는 제9503.00-3800호에 「전파법」을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으로 신설하고 드론을 그 적용대상 물품으로 명시함

117)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 4. 19. 시행)

- 드론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무선조정용 무선기기에<sup>118)</sup> 해당되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따라서 무선조정이 가능한 드론은 그 용도와 관계없이 「전파법」상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그러나 「세관장확인고시」에는 완구용의 드론이 분류되는 호에만 「전파법」상 수입요건을 추가하여 용도에 따라 세관장 확인 여부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임
  - 드론은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물품으로 추가된 2018년 당시에는<sup>119)</sup>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하였으나 완구용만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됨
  - 카메라가 부착된 촬영용 드론은 제8525.80호에 분류되지만, 해당 호의 「전파법」상 세관장 확인물품은 카메라에 한함
    - 카메라와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는 적합성 기준과 유형이 상이한 요건임
  - 비행용 드론이 분류되는 제8802.20호와 농약 살포용 드론이 분류되는 제8424.49호는 「전파법」상 수입요건이 없음
  
- 2022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시 완구용이 아닌 드론을 분류하는 제8806호가 신설되었으나,<sup>120)</sup> 해당 호에 「전파법」상 수입요건은 연계되지 않음<sup>121)</sup>
  - 반면, 제9503호의 완구용 드론은 개정 전과 같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처럼 드론 또한 가상화폐 채굴기와 마찬가지로 「세관장확인고시」상 물품의 범위 중 일부 품목만 HSK 10단위가 연계됨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게다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대상물품 중 드론이 해당하는 무선조정용 무선기기가 분류되는 제8526호는 세관장 확인이 필요함<sup>122)</sup>

11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5호 라목 1)

119)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2022. 1. 1. 시행 이전의 것)

120)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2022. 1. 1. 시행)

12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시행)

12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상 무선조정용 무선기기의 상위 분류인 특성소출력 무선기기가 제8526.92-0000호의 세관장 확인대상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본부세관은 2022년 1월 수중드론을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함<sup>123)</sup>

- 2022년 이전 수중드론은 제8525호나 제9006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해당 호는 무선조정용 무선기기에 대한 「세관장확인고시」에 따른 수입요건이 없음
  - 제8525호는 카메라에 대한 적합등록이 필요한 반면,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는 적합 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업체는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을 사용함
- 그뿐만 아니라 해당 호는 「통합공고」상 수입요령도 연계되지 않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를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를 인정할지 앞으로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sup>124)</sup>

-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물품이 포함되며, 소출력 무선기기는 물품별 수입요령에 공고되어 있음이 인정될 수도 있음
  - 드론은 기술발전에 따른 신제품으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워 HSK 10단위에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에서 완구용 드론만 추가되고, 개정된 HS상 드론의 특계호에도 요건이 연계되지 않아 부정수입죄의 인정이 쉽지 않아 보임

12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수중드론 부정수입·유통업체 적발」, 보도자료, 2022. 1. 25.

124) 「통합공고」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앞서 「세관장 확인대상」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인정 되는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 해당하므로 「통합공고」의 미공고 사실은 별론으로 함

[사례 Ⅲ-6] 수중드론을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사건

- 사건개요: 2022년 1월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중드론 200여대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 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
- 적발사항
  - A업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의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하여 수입통관
  - B업체: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 사용  
 상업용 판매물품을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허위 신고
- 관련 규정
  - 「세관장확인고시」 별표 2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 가.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3) 「전파법」 해당 물품 (가) 적합성평가 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li> <li>○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 (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li> </ul>

나. 물품별 수입요건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시행 이전의 것)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	관계 법령
8525.80	텔레비전카메라 · 디지털카메라 ·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비디오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전파법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시행)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	관계 법령
8806.2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위사업법]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		

자료: 관세청(2022. 1. 2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한편, 드론 역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상 명칭이 아닌 드론으로 「세관장확인고시」에 공고되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는 전자파 적합성 및 무선 기준에 따라 적합인증이 필요함<sup>125)</sup>
- 이와 같이 「세관장확인고시」는 확인방법과 물품을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으로 구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HSK 10단위에 연계된 물품이 상이한 경우 세관장 확인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또한 이 경우 HSK 10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물품이 단순히 누락되었는지 세관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아 제외된 것인지 수출입자가 파악하기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세관장확인고시」 별표 1 및 2의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 물품의 규정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물품별 수출입 요건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는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항의 추가도 검토할 수 있음

## 2.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는 물품 관련

- 「세관장확인고시」에 공고된 물품을 통관하는 때에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① 용도 등 비대상, ② 면제대상, ③ 확인생략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임
  - 용도 등 비대상이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요건의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HSK 10단위가 연계되었지만 세관장 확인물품이 아닌 물품을 말함

12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5호 라목 1)

- 예를 들어, 플라스틱제 포장용기·마개가 분류되는 제3923호는 「수입식품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하지만 식품용 용기가 아닌 물품은 요건이 필요 없음
- 면제대상은 개별 법령에서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 하는 물품이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는 물품임
- 확인생략 대상은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세관장이 통관 시 확인하지 않는 물품을 말함

### 가. 용도 비대상 물품의 악용 또는 오인

- 통관 시 수출입 요건을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는 물품 중 실제로 수출입 요건과 관련한 증명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용도 비대상에 한함
  -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상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HSK 10단위가 연계된 것이므로 이를 증명할 절차가 특별히 필요 없음
- 반면 면제대상과 확인생략 대상은 면제와 확인생략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거나 단순히 세관장의 확인이 생략된 경우라면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면제대상은 특정한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도록 면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 등을 증명하는 등의 면제절차가 필요함
  - 확인생략 대상 또한 세관장의 확인이 생략되는 것일 뿐 요건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요건이나 면제의 증명이 필요함
- 이러한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용도 비대상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가령, 플라스틱제의 식품용 용기를 수입하면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 비대상으로 허위신고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로 관세청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수입하면서 식약처 신고 없이 국내 유통한 업체를 「수입식품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함<sup>126)</sup>
-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에 신고해야 함
- 그러나 이를 용도 비대상인 산업용으로 수입신고하고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음

#### [사례 Ⅲ-7]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사건

- 사건개요: 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1억 4천만 켤레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4개 업체를 「수입식품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 적발사항
  - 수입할 때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유통할 때 제품의 포장에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 식약처에 신고된 것처럼 가장
  - 업체들은 식품 조리용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무장갑을 수입해 대형마트, 제빵업체, 김치제조공장 등에 판매



자료: 관세청(2020. 12. 29.)

- 또한 수출입자가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는 물품 모두를 용도 비대상으로 오인하거나 악용하여 수출입 요건 없이 수출입하는 경우도 발생함
- 면제대상 또는 확인생략 대상물품을 수출입하면서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수출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sup>126)</sup> 관세청, 「내가 썼던 김장용 고무장갑도 불법수입 제품?」, 보도자료, 2020. 12. 29.

- 특히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 물품은 생략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용도 비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움
  - 이와는 다르게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조항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이 수입하는 경우 특정 법령에 따른 수출입 요건의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 또한 생략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즉,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경우를 수출입 요건 자체가 필요 없는 용도 비대상으로 오인하여 요건구비 없이 수출입하는 경우가 빈번함
  - 세관장 확인생략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도 세관장 확인 수출입 요건 비대상 신고 방법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음<sup>127)</sup>
  -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한 요건 비대상 신고가 많고, 그 사유가 불명확하여 요건회피 통로로 이용될 위험을 차단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함
  
- 이에 따라 신고인은 세관장 확인이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고시」 대상 법령에 근거한 요건 비대상 상세코드를 선택하여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함<sup>128)</sup>
  - 또한 비대상 상세코드 중 비대상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상세 사유란에 면제확인서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그러나 해당 조치에 따른 요건 비대상 상세코드에는 면제대상이나 확인생략 대상의 코드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을 요건 비대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
  - 면제대상이나 확인생략 대상은 요건 대상이지만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건을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 비대상은 아님

127) 관세청, 「세관장 확인 수출입 요건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시행 안내」, 공문, 2021. 7. 30.

128) 관세청(2021. 7. 30.)

- 다만 비대상 상세코드의 표제목은 ‘세관장 확인 수출·입물품 법령별 수입요건 비대상, 면제대상, 확인생략 대상 등 사유코드’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함
- 따라서 요건 자체가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요건 비대상 상세코드라는 명칭 대신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모든 물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요건 미확인 상세코드는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인 용도 비대상, 면제대상, 확인생략 대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또는 비대상 상세코드의 표제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대상 등 상세코드는 비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의 코드도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임

〈표 Ⅲ-1〉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요건 비대상 상세 사유 코드 예시

구분	개방 전	개정(2021년 8월부터 시행)
A (용도 비대상)		A0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2조,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음)
		A0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A0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 기구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B (요건 면제대상)	요건 비대상 사유를 텍스트로 입력	B0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B02(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B0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별표 9 제1호 다목)에 따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B04 :
C (요건 제출생략 대상)		C02(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Z(기타)		Z01(기타 세관장 확인 수입요건 비대상 등 사유를 기재)

자료: 관세청(2021. 7. 30.)

- 게다가 세관장 확인생략 규정 중 제1호와 제2호의 일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를 인용하여 수출입자가 각 호의 규정을 동일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큼
  - 제1호에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의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고 규정함
  - 제2호는 「통합공고」 요건면제 조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통합공고」에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건 및 절차 없이 수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함<sup>129)</sup>
    - 이 경우 「통합공고」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이로 인하여 요건면제확인서가 필요한 물품을 별도의 절차 없이 세관장 확인이 생략 가능한 물품으로 판단하여 면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도 비대상으로 신고하기도 함
  - 실제로 많은 수출입자들이 제1호와 제2호의 수출입승인면제 관련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용도 비대상과 같은 요건 예외물품이라고 봄
  
- 따라서 이러한 수출입승인면제와 관련된 세관장 확인생략 규정에서의 유사한 표현은 그 의미를 다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규정이 동일한 대상에 적용된다면 규정이 중복되는 것이며, 더욱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요건생략 절차를 요구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반대로 상이한 의미라면 유사한 표현으로 수출입자의 오인을 초래하여 수출입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함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수출입승인면제규정은 「수출입공고」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그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음
  - 즉, 「수출입공고」에 따른 물품을 구비해야 하는 요건 없이 수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
  
- ‘수출입승인면제물품’과 ‘수출입승인면제 사유에 해당’이라는 문구의 차이는 규정이 적용되는 수출입 물품의 「수출입공고」상 대상 여부로 보임

129) 「통합공고」 제12조 제1항 제3호

-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은 「수출입공고」에 따른 수출입승인 대상물품 중 면제대상인 물품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반면 ‘수출입승인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출입승인 대상이 아닌 물품이더라도 면제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차이를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에도 반영하여 해석한다면, 각 호가 적용되는 물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이 경우 제1호의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은 「수출입공고」 대상물품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 요건의 세관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한편 제2호의 수출입승인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공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유인 경우 세관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2022년에 이루어진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에서 세관장 확인생략 규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제외조항에서 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동일한 물품이 제1호와 제2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가 우선함을 규정함

〈표 Ⅲ-2〉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② ----- ----- ----- ----- -----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공고 제13조에 따라 요건 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 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

자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관세청공고, 2021. 11. 23.) 신·구 조문 대비표

- 이러한 개정사항을 볼 때 수출입승인 면제대상과 수출입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임
  -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동일한 의미라면 적용대상이 동일하므로 해당 규정 간의 적용순위를 정하는 제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이 승인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제1호의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와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즉,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제2호가 제1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음
    -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이 요건면제확인서 없이 세관장 확인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없음
  
- 이러한 규정과는 다르게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이 「수출입공고」의 승인대상 중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도 있음
  - 「세관장확인고시」 제2항 제1호의 단서조항에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법령을 열거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수출입승인 대상은 없음
  - 또한 세관장 확인 수출입 요건 비대상 신고방법에 따른 요건 비대상 등 상세코드에도 제1호에 해당하는 코드에 여러 법령이 연계되어 있지만, 수출입 승인 대상에 적용되는 법령이 아님

〈표 Ⅲ-3〉 세관장 확인 수입물품 법령별 수입요건 확인생략 대상 사유 코드 예시

법령명	코드값	코드값명
비료관리법	09C0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물품
사료관리법	10C0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물품
농약관리법	11C0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물품
액화석유가스법	21C0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물품

〈표 Ⅲ-3〉의 계속

법령명	코드값	코드값명
전기생활 용품 안전법	23C0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물품
계량에 관한 법률	25C0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물품
생화학 무기법	27C0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물품
오존층 보호법	30C0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물품
:	:	:

자료: 관세청(2021. 7. 30.)

- 따라서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가 「수출입공고」 대상물품이 아닌 경우도 적용되어야 제외조항이나 사유코드를 적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을 보았을 때 제1호 또한 제2호와 동일하게 수출입승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세관장확인고시」, 「대외무역법」과 「수출입공고」의 개정과정에서 기존 규정의 영향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1997년 이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은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수출입공고」에서 정하도록 하였음<sup>130)</sup>
  - 이에 따라 1994년 수출입 자유화 이후에도 「수출입공고」에서 정하는 수출입 승인 대상이 광범위하였으며, 해당 물품이 적용되는 개별 법령상 수출입 요건 또한 다양하였음
  - 즉, 수출입승인 대상이 광범위하던 때 적용되던 세관장 확인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서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의 「수출입공고」상 수출입승인 대상이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법령만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30) 「대외무역법」(법률 제5211호, 1997. 3. 1. 시행 이전의 것) 제18조 내지 제19조

- 이 경우 「수출입공고」에 수출입승인 대상이 추가되면 「세관장확인고시」 또한 개정해야 하지만, 수출입자의 정확한 규정적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요건 비대상 등 상세코드에서도 해당 코드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승인면제물품에 대한 코드를 명시함으로써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의 의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나. 요건면제 규정의 중복 또는 상충

- 「세관장확인고시」에 따른 확인생략 규정은 「통합공고」에 따른 요건면제물품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조항에는 「통합공고」가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령, 즉 개별 법령의 요건확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됨
- 그러나 요건면제 대상은 「세관장확인고시」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면제절차가 필요한 물품<sup>131)</sup>으로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과 별개의 개념임
- 면제대상의 확인생략은 면제절차의 이행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관장확인고시」 규정상 그렇게 볼 수 없음
-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요건면제물품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면제절차의 이행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요건면제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 대상을 세관장 확인생략 규정에 포함함에 따라 수출입자가 면제물품은 면제절차가 필요 없다고 오인할 수 있음
- 수출입자는 세관장 확인생략물품은 수출입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13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 제6호

-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 중 하나인 면제물품에 대하여도 면제절차가 필요 없다고 여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세관장확인고시」에 요건면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요건면제물품의 경우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함
  - 「세관장확인고시」에 요건면제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함<sup>132)</sup>
    - 「세관장확인고시」 별표의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에서 「약사법」 등의 경우 요건면제물품에 대한 면제확인서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7조 제2항 제1호에 제외조항을 추가하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함<sup>133)</sup>
- 그뿐만 아니라 세관장 확인 수출입 요건 비대상 등 신고방법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비대상 등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를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sup>134)</sup>
  - 요건면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수출입 신고 시 요건확인 비대상의 상세 사유란에 면제확인서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표 III-4〉 세관장 확인 수입물품 법령별 수입요건 요건면제 대상 제출서류 예시

법령명	코드값	코드값명	요건 비대상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약사법	01B0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긴급사용승인 등) 제1항 제1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입자에게 수입하게 하는 경우	긴급사용승인 공문

13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관세청공고, 2021. 11. 23.)

13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관세청공고, 2021. 11. 23.)

134) 관세청(2021. 7. 30.)

〈표 Ⅲ-4〉의 계속

법령명	코드값	코드값명	요건 비대상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약사법	01B1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긴급사용승인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하게 하는 경우	긴급사용승인 공문
약사법	01C01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의 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물품, 단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수입요건 구비대상이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는 생략대상임	자가치료 목적 처방전
약사법	01C0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요건면제 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요건면제수입 확인(신청)서
비료 관리법	09B01	「비료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해성 기준 이하인 경우	수입비료 등의 증금속 검사면제 증명서
비료 관리법	09C0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요건면제 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요건면제수입 확인(신청)서
액화석유 가스법	21B0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받은 가스용품(「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용품, 「동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 바목 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성능이 변경된 가스용품은 제외)	가스용품 검사생략 신청서
액화석유 가스법	21B0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가스용품 검사생략 신청서
:	:	:	:

자료: 관세청(2021. 7. 30.)

- 이러한 조치로 요건면제물품의 경우도 면제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으나  
세관장 생략대상에 해당하는 요건면제물품도 면제서류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  
점도 분명해져 법령상 모순이 발생하게 됨
  -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의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면제물품의 경우 세관장 확인  
생략 대상이지만 요건면제확인서를 수출입 시 신고해야 함
  
- 한편,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직접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개인용품으로 신고하여 요건을 면제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세관장확인고시」의 대상 법령의 대부분은 개인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량을 한정하여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음
    - 「전파법」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함<sup>135)</sup>
  
- 관세청은 음악재생용 셋톱박스를 개인이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밀수입 및  
부정수입한 A업체 대표를 적발함<sup>136)</sup>
  - 셋톱박스는 음원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음악 재생기기로서 A업체와 음원공급을  
체결한 업체에 제공되는 것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임
  - A업체 대표는 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셋톱박스를 주문하여 「전파법」상 요건을  
회피하고 목록통관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도 하지 않음

135)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 2 제1호 자목

136)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매장음악 재생용 셋톱박스 밀수입자 적발」, 보도자료, 2021. 10. 27.

[사례 Ⅲ-8] 음악재생용 셋톱박스를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사건

- 사건개요: 2021년 10월 서울본부세관은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직원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A업체 대표를 적발함
- 적발사항
  - 직원들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한 후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셋톱박스를 구입하는 데 이용하여 직원평균 약 20개, 최소 1개~최대 60개의 셋톱박스 수령
  - 세관이 목록통관 적용을 배제하고 정상 수입신고하도록 하자 직원들에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파법」 상 요건을 부정하게 면제받고 수입
- 관련 규정
  - 「세관장확인고시」 별표 2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3) 「전파법」 해당 물품 (가) 적합성평가 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지험 신청기자재 (나)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li> <li>○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 (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li> </ul>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 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5.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 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2. 제1항 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3. 제1항 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자료: 관세청(2021. 10. 27.);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

- 해당 사건에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개정된 「세관장확인고시」와 신고방법을 적용하였다면 부정수입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 살펴보고자 함
  - 개인용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며, 이는 「통합공고」의 요건면제 대상으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 시 세관장 확인이 생략됨
  
- 「세관장확인고시」와 신고방법에 따라 개인용 기자재는 요건제출생략 대상 코드와 요건면제확인서 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전파법」은 「통합공고」가 적용되는 법령으로 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 확인이 생략되므로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수입신고 방법에 따라 요건 비대상 등 상세사유코드와 필수구비서류의 발급번호를 기재해야 함
  
- 그러나 개인용 기자재는 개별 법령인 「전파법」에 따른 요건면제 대상이므로 요건 면제 대상임과 동시에 요건제출 생략대상이기도 함
  - 세관장 확인생략 규정에 요건면제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하나의 물품이 요건면제 대상에도 해당하고,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임
  
- 이 경우 개인용 기자재의 수입신고 시 비대상 등 상세코드를 요건면제 대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요건제출 생략대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개인용 기자재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 2에 따라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코드를 수입신고할 수 있음
  - 또한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합공고」 요건면제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 시 이에 대한 코드를 기재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면제대상과 확인생략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어떻게 할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사례는 요건면제확인 절차가 달라지게 됨
  - 개인용 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요건면제 절차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면제확인서의 제출이 필요 없음
  - 반면 개인용 기자재를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통합공고」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표 Ⅲ-5〉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 비대상 등 상세 사유 코드 예시

법령명	코드값	코드값명	요건 비대상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전파법	39B01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전파법	39C0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요건면제수입 확인(신청)서
:	:	:	:

자료: 관세청(2021. 7. 30.)

-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음악재생용 셋톱박스를 개인용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고시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면제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음
  - 수입자가 음악재생용 셋톱박스를 「전파법」에 따른 요건면제 대상으로 수입신고 하는 경우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이는 「세관장확인고시」가 요건면제와 확인생략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두 대상이 중복되어 고시와 개별 법령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 요건면제와 확인생략을 구분하여 확인생략 규정에 면제대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동일한 물품이 동시에 요건면제와 확인생략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면제 절차나 세관장 확인생략 절차가 상충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하나의 물품이 동시에 요건면제 대상과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요건면제와 확인생략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이를 구분한다면 세관장 확인면제 대상에 대한 면제절차의 이행을 세관장이 확인 한다는 법령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요건면제 절차와 관련하여 「세관장확인고시」와 개별 법령의 규정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음

## IV.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1. 수출입 요건과 세관장 확인의 구분

- 「관세법」 제226조는 ① 수출입 요건에 관한 조항과 ② 세관장 확인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항은 수출입자가 수출입 시 구비·증명해야 할 승인·허가 등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제2항은 세관장이 통관 시 확인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① 수출입자의 의무인 수출입 요건과 ② 세관장의 의무인 세관장 확인을 구분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수출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의 명칭을 신고해야 하지만 세관장 확인사항에 대해서만 신고가 되고 있음
  
- 이는 수출입자가 「관세법」 제226조의 모든 조항을 세관장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각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관세법」 제226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명확히 구분한다면, 이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또한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임
  
- 수출입자가 제1항의 수출입 요건을 세관장 확인에 관한 것으로 오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출입 요건 구비를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보임

- 증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 밝히는 것임<sup>137)</sup>
- 이에 따라 수출입자는 증명에 대한 해당 조항의 요건을 구비했음을 서류와 같은 증거를 통해 밝히는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게 됨
  
- 이렇게 증명한 수출입 요건을 세관장이 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확인한다고 보고, 제1항 또한 세관장 확인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임
  - 즉, 제1항을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한 수출입자의 증명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2항을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것임
    - 그러나 제1항은 수출입 요건에 대한 수출입자의 구비 및 증명의무에 관한 규정임
  
- 따라서 수출입 요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에 대한 대응을 연상하게 하는 증명을 수출입 요건의 구비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1항에서는 허가·승인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증명절차에 대한 준용 조항인 제3항에 증명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임
  
- 또한 수출입자가 수출입 요건에 대한 규정을 세관장 확인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는 이유는 규정에서도 그 의미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함
  - 「관세법」 제226조를 인용하는 규정에서 관련된 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해당 조항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는 규정의 경우 그 대상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세관장 확인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이 선별되지만, 서류제출 시 세관장 확인 요건뿐 아니라 수출입 요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규정만 비교한다면 선별기준의 범위가 선별 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범위보다 좁은 것임

137) 네이버 어학사전, 「증명」,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f3ab6a5cccd34e0181353cc0222a43c6>, 검색일자: 2022. 2. 16.

- 따라서 세관장 확인물품 중에서 서류제출 여부를 결정하면 세관장 확인대상 이외의 수출입 요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됨
- 이로 인하여 수입자는 제출서류 역시 서류제출 선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쉬워 규정에 따른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무작위 선별이나 세관장 확인이 아닌 사유로 서류제출이 결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규정의 적용범위가 선별기준보다 넓을 수 있음
  - 이처럼 다른 사유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수출과 수입의 제출서류 규정이 다른 점도 수출입자가 수출입 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유로 보임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호에서 세관장 확인물품<sup>138)</sup>은 각 개별 법령별 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함
  - 반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sup>139)</sup>에 대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와 같이 수출의 경우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제출하면 되므로 수입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아 규정과 다르게 서류제출이 이루어지게 됨
  -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 대상을 통보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물품의 요건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sup>140)</sup>
  - 이외는 다르게 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이 세관장 확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결정된 경우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실무적으로 세관장 확인물품이 아니라면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138)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1항을 인용함

139)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를 인용함

140)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항, 제11조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관한 다른 규정에도 관련된 항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226조와 관련하여 수출입 신고서의 항목, 신고 시 제출서류, 부정수출입죄에 해당 조항을 직접 언급하거나 해당 조항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수출입 신고서류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는 법 제226조라고만 명시하여 수출입 요건대상에 대한 것인지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제1항의 수출입 요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수출입 신고 시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
  -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수출입 요건에 대한 서류는 제출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관세법」 제226조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관련 항의 번호를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의 경우 '법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개정한다면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 확인물품뿐 아니라 수출입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함이 명확해짐
  
- 반면,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고시의 목적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sup>141)</sup>
  - 「세관장확인고시」는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4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1조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확인고시」에서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의 수출입 요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수출입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세관장확인고시」 제3조 내지 제6조의 요건신청 관련 규정은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수출입 요건에 대한 규정이나 「세관장확인고시」에 포함되어 있음
  
- 「세관장확인고시」 제3조는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 필요의 물품이라고 명시하여 해당 조항이 수출입 요건에 관한 조항임을 알 수 있음
  - 허가·증명 등의 증명이라는 문구는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의 문구와 동일하며, 이는 수출입 요건을 의미함
  
- 이러한 「세관장확인고시」상의 「관세법」 제226조 제1항에 대한 조항은 수출입자가 법 제226조는 세관장 확인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오인하는 이유가 됨
  -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 대한 고시인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제1항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오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요건신청과 관련한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해당 조항은 수출입 요건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이동할 수 있음
  - 다만 세관장 확인물품 또한 해당 조항에 규정된 방법 등에 따라 요건신청을 해야 하므로 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함
  
- 이와 같이 「관세법」 제226조의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는 대상이 다름을 구분한다면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에 대한 확인 권한이 있다는 점도 명확해질 것임
  - 「세관장확인고시」에 공고되지 않은 수출입 요건이라 하더라도 세관장이 그 구비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음이 분명해질 것임

- 그러나 세관장이 구비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는 수출입 요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함
  - 일반적으로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개별 법령과 「대외무역법」,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요건을 뜻하지만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함
  
- 즉, 세관장의 확인권한과 관련된 「관세법」 제226조 제1항과 제270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방법이 있음
  - 해당 조항은 각각 수출입 요건의 증명, 부정수출입죄에 관한 규정으로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정하는 법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문구상의 ‘법령’의 범위를 규정하면 수출입 시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 요건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해당 조항의 법령은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볼 때 「관세법」 외의 법령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다른 법령’과 같은 문구로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서도 수출입 요건이 다른 법령에 따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항도 이와 통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관세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법령’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음
  - 세관장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는 다른 조항인 제110조의 관세조사 규정도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사항을 조사한다고 명시함
  - 또한 그 외에도 제246조의3에서 세관장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다만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 요건의 범위를 다른 법령이라고 명확히 하면 세관장과 수출입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관장확인고시」나 「통합공고」에 따른 수출입 요건 외에도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각 개별 법령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게 됨

- 그러나 관세조사와 관련한 규정에서 이미 세관장이 심사하는 수출입 요건의 범위에 다른 법령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장의 업무가 가중되지는 않음
  - 관세조사의 심사분야에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포함되며 관세조사 시 기타 개별 법령 관련 허가·승인내역을 제출해야 함<sup>142)</sup>
- 반면, 수출입자 역시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가중은 없지만 부정수출입죄의 인정범위가 늘어날 수 있음
  - 「세관장확인고시」나 「통합공고」의 적용 법령이 아닌 법령에 따른 수출입 요건 구비 의무 위반 시 부정수출입죄가 성립될 수 있음
- 이러한 부정수출입죄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법령이 다른 법령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임
  - 다만 다른 법령을 대외무역과 관련된 법령으로 한정하였을 뿐으로 「관세법」 제226조나 제270조를 개정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수출입 요건과 세관장 확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면 정확한 수출입 신고와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수출입 요건에 대해 세관장은 확인할 권한이 있고, 세관장 확인대상은 세관장이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올바른 수출입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음

## 2. 세관장 확인물품 공고방식의 통일

- 「세관장확인고시」에서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은 ① 대상 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②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음
  - 즉, 세관장 확인물품은 ①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물품과 ②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HSK 10단위가 연계된 물품으로 구성됨

14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이처럼 세관장 확인물품을 공고하는 규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음에 따라 수출입자가 세관장 확인물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앞서 살펴본 제빙기,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등의 사건은 모두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공고되지 않아 이를 세관장 확인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임
  
- 더욱이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의 관계가 통일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수출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법령별로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 따른 물품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중 일부만 물품별 수출입 요건으로 공고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세관장 확인물품의 공고방식을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이 일치하도록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물품과 물품별 수출입 요건상 물품이 일치한다면 단순히 누락된 물품을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인정하기 용이해짐
  
- 다만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관련 법령·대상물품·대상물품별 HSK 10단위 번호를 관세청에 요청하여 세관장 확인물품이 결정되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 요건확인기관에서 법령에 따른 물품을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요청하면서 HSK 10단위 번호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이 경우 법령에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HSK 10단위 번호를 제출한 이유를 파악하고 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또는 다른 개선방안으로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임

- 만약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가 물품별 수출입 요건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한다면 단순히 누락된 HSK 10단위 물품은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물품별 수출입 요건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을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반대로 물품별 수출입 요건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한다면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한 판단을 HSK 10단위 연계 여부로 알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
  - 다만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HSK 10단위 연계가 누락된 물품의 경우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해짐
  
- 이와 같이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물품별 수출입요령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출입자의 통관 관련 협력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수출입자의 세관장 확인물품 여부 판단이 용이해지므로 세관장 확인과 관련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3. 요건 면제규정과 세관장 확인생략규정의 분리

-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은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출입 요건에도 불구하고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sup>143)</sup>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 제외)
    - 「통합공고」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이 특정 법령 적용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14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 이러한 세관장 확인생략규정에는 엄격히 말하면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과 구분되는 요건면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음
  - 「통합공고」 제12조 제1항에는 「통합공고」 적용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세관장 확인이 생략됨
  
- 요건면제물품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면제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면제 관련 서류를 수출입 신고해야 하므로 세관장 확인이 생략된다고 볼 수 없음
  - 관세청은 수출입 요건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을 통해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이 면제 되는 경우 그 증빙서류의 명칭 등을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 또한 일부 법령의 경우 요건면제서류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구비요건으로 규정하여 면제절차 이행 여부 자체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요건면제 대상이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입자가 면제절차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생략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출입자가 요건면제물품에 대한 면제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면제물품을 세관장 확인생략규정에서 분리하여 요건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7조 제2항 제2호를 「통합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여 요건 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임
    - 기존에 포함되었던 「통합공고」 제12조 제4호는 확인생략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세관장확인고시」 대상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건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 이처럼 세관장 확인생략규정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면제물품을 제외함으로써 면제 절차에 대한 세관장 확인이 생략되지 않음을 분명히 할 수 있음
  - 이로써 요건면제물품에 대한 수출입자의 성실한 면제절차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이 개정하더라도 제2호는 「통합공고」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서, 제3호는 요건증빙서류를 신고해야 하므로 진정한 세관장 확인생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세관장 확인생략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는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고 세관장 확인 절차를 해당 서류의 명칭을 신고하는 것으로 같음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제1호의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은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호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제1호의 제외조항에서 제2호가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1호 단서조항의 법령은 「통합공고」의 요건면제의 예외 법령에 포함되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수출입 요건은 여전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하게 됨
    - 제1호의 단서조항은 제3호에도 적용되는데, 제3호에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도록 정한 법령은 단서조항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호 삭제와 무관함
    - 다만 제3호의 적용 법령이 향후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3호에서 준용하였던 제1호의 단서조항을 제3호의 단서에 열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임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 없는 제1호를 삭제함으로써 세관장 확인생략 절차를 생략 관련 서류의 명칭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립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세관장 확인생략 대상임을 보여주는 서류의 명칭을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또한 세관장 확인생략규정에서 분리한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면제규정을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요건면제규정을 신설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면제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또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함

- 그뿐만 아니라 2022년 신설한 요건면제물품에 대한 규정<sup>144)</sup>을 해당 조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에서 면제물품을 구비요건으로 규정한 경우는 면제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요건신청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면제물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 개별 법령에 따른 면제절차와 「세관장확인고시」 규정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개별 법령에서 면제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할 수 있음
  - 면제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면제절차가 생략되면 면제 확인서의 신청 및 제출이 필요하지 않게 됨
  
- 그러나 개별 법령의 면제절차 생략규정을 악용하여 수출입 요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개별 법령에서 면제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면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합공고」 제13조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서를 신고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건면제규정을 세관장 확인생략규정에서 분리함으로써 수출입자의 요건면제물품에 대한 면제절차를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음
  - 요건면제를 세관장 확인생략으로 오인하여 수출입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요건 면제를 악용하여 수출입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4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6조(요건신청서 제출서류 등)

- ① 요건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류의 정정 등 그 밖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 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요건면제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참고문헌

- 관세청,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2014.
- \_\_\_\_\_, 「화재유발 부정 수입물품 기획단속」, 보도자료, 2018. 1. 22.
- \_\_\_\_\_, 『세관장 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 2020.
- \_\_\_\_\_, 「내가 썼던 김장용 고무장갑도 불법수입 제품?」, 보도자료, 2020. 12. 29.
- \_\_\_\_\_, 「세관장 확인 수출입 요건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시행 안내」, 공문, 2021. 7. 30.
- \_\_\_\_\_, 「서울본부세관, 매장음악 재생용 셋톱박스 밀수입자 적발」, 보도자료, 2021. 10. 27.
- \_\_\_\_\_, 「서울본부세관, 수증드론 부정수입·유통업체 적발」, 보도자료, 2022. 1. 25.
- 관세청·식약처, 「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송치」, 보도자료, 2020. 11. 27.
- 김연지, 「무신고 수입 제빙기 업체 고발에도 檢은 무혐의」, 『노컷뉴스』, 2020. 12. 29., <https://www.nocutnews.co.kr/news/5472180>, 검색일자: 2022. 2. 8.
- 김종덕·정민철·김지현, 「한국의 비관세 조치 현황: UNCTAD 자료를 중심으로」, KIEP 기초자료 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박효주, 「신고대상 안내 없었는데…롯데칠성·롯데알미늄 제빙기 행정처분에 속앓이」, 『전자신문』, 2021. 8. 12., <https://m.etnews.com/20210812000062>, 검색일자: 2022. 2. 8.

UNCTA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2019*, 201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 1003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노182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4. 12. 선고 2000노998 판결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비관세 조치」,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3096>, 검색일자: 2021. 12. 31.

네이버 어학사전, 「증명」,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f3ab6a5ccd34e0181353cc0222a43c6>, 검색일자: 2022. 2. 16.



부록 1.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sup>145)</sup>

## 가. 수입물품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 「약사법」 해당 물품	○ 표준통관예정보고 ○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 물품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3) 「식물방역법」 해당 물품	○ 수입식물 검역신청
(4)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 물품	○ 동물 검역신청 ○ 축산물 검역신청
(5) (삭제)	(삭제)
(6) 「화장품법」 해당 물품	○ 표준통관예정보고
(7) 「의료기기법」 해당 물품	○ 표준통관예정보고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수입승인신청
(9) (삭제)	(삭제)
(10) (삭제)	(삭제)
(1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표준통관예정 보고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당 물품	○ 수산생물 검역신청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
(14) (삭제)	(삭제)
(15) 「전파법」 해당 물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신청
(16) (삭제)	(삭제)
(17) 「종자산업법」 해당 물품	○ 종자 수입요건확인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 전기용품 요건확인 신청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 신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 신청

14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3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9) 「사료관리법」 해당 물품	○ 사료수입신고
(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 용기검사신청
(2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 물품	○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22) 「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형식승인확인 신청
(23) 「위생용품 관리법」 해당 물품	○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 신청
(24) 「농약관리법」 해당 물품	○ 농약품목등록 또는 농약수입허가 확인 신청
(2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삭제) ○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수입신고 확인 신청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 물품	○ 수입 가스용품 요건승인 신청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당 물품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

## 나. 수출물품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 물품	○ 동물 검역신청 ○ 축산물 검역신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수출승인신청
(3) 「식물방역법」 해당 물품	○ 수출식물 검역신청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당 물품	○ 수산생물 검역신청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폐기물 수출허가(신고) 확인
(6) (삭제)	○ (삭제)
(7) (삭제)	○ (삭제)
(8) 「문화재보호법」 해당 물품	○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재 확인 신청

## 부록 2.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 가.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sup>146)</sup>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삭제)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서
(4) 「외국환거래법」 해당 물품	○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가) 야생생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 삭제 >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 ○ < 삭제 >
(7) 「문화재보호법」 해당 물품	○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9) 「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 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11) (삭제)	
(1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중 인삼종자	○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13) 「방위사업법」 해당 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서

14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1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적합 통보서

#### 나.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sup>147)</sup>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해당 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한약재  (라) 동물용 의약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보고서 ○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정보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 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 기능식품, 축산물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삭제)	
(5) 「식물방역법」 해당 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6) 「사료관리법」 해당 물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7)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 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8) (삭제)	

147)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해당 물품 (가) 안전인증 대상 제품 (나) 안전확인 대상 제품 (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li> <li>○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li> <li>○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 (단, 전기용품에 한함)</li> </ul>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 (신고)확인서</li> </ul>
(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li> </ul>
(12) 「외국환거래법」 해당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li> <li>○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li> </ul>
(13) 「방위사업법」 해당 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li> </ul>
(14) 「화학물질관리법」 해당 물품 (가) 금지물질 (나) 제한물질 (다) 유독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li>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li>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li> </ul>
(15) 「석면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li> </ul>
(16) 「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li> <li>○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li> </ul>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li> <li>○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li> </ul>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다만,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 삭 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li>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li> <li>○ &lt; 삭 제 &gt;</li> </ul>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li> </ul>
(20) 「비료관리법」 해당 물품 중 위해성검사 대상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증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li> </ul>
(21) 「먹는물관리법」 해당 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li> </ul>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22) 「종자산업법」 해당 물품 (가) 식량작물종자 (나) 채소종자 (다) 벼씨종균  (라) 약용종자 (마) 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li> <li>○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li> <li>○ 한국중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li> <li>○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li> <li>○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li> </ul>
(23) 「화장품법」 해당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ul>
(24) (삭제)	
(25) 「의료기기법」 해당 물품 (가) 의료기기  (나)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 사용용,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동물용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li>○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추천서</li> <li>○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li> </ul>
(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ul>
(27) (삭제)	
(28) 「통신비밀보호법」 해당 물품 중 감청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li> </ul>
(29)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물품 (가) 석면함유제품  (나) 제조등 금지물질 (다) 안전인증 대상제품  (라) 자율안전확인 대상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확인서</li> <li>○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li> <li>○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li> <li>○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li> </ul>
(3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li> </ul>
(3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당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li> </ul>
(32) (삭제)	
(33) 「전파법」 해당 물품 (가) 적합성평가 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li> </ul>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나)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 (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중 고위험병원체	○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중 고압가스용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3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 물품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 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37) 「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
(38) 「위생용품 관리법」 해당 물품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39) 「농약관리법」 해당 물품	○ 농촌진흥청장의 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가) 목재, 목재제품, 목재펠릿 (나) 성형목탄, 목탄	○ 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 ○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4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가) 생태계교란 생물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4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신고 적합 통보서
(4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 물품 (가) 이동식부탄연소기·이동식프로판연소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당 물품 (가) 삼상유도전동기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요건 확인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확인서

### 부록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 가. 수출승인의 면제<sup>148)</sup>

##### 1.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출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별송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출국의 목적, 여행의 기간, 출국자의 직업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나. 외국에 주거를 이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출국하는 자와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출국하는 자 중 가족을 동반한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출국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출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출하는 이사물품이나 별송으로 반출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그 출국의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다.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출하는 개인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출국시에 반출하는 물품
- 마. 외국정부의 초청으로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에게 속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 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및 원료 등의 물품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148)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 2. 영 제19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화 5만 달러 상당액(신고가격 기준)이하의 물품
- 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다. 수출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라.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주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입한 나용선 또는 임차항공기의 반입을 위한 반출물품
- 바.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입된 원료의 잔량분 또는 수탁판매수입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판매되지 아니한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사.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내용에 따라 기술대가를 현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아.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자.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차. 외국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반출하는 업무용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 카. 우리나라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시 반출하는 물품

- 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파. 외국업자의 주문으로 제작되어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후 반출하려는 금형
- 하. 그 밖에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3. 제19조제2호라목에 따른 수출승인 면제

- 가. 무상으로 반입하여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 1) 금속제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될 용기 또는 기구
  - 2)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 및 기구
  - 3) 우리나라에 입국한 순회 흥행업자의 흥행용 물품
  - 4) 텔레비전 방송국이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반입한 영화필름
  - 5) 공사용(수리용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용의 기계 또는 기구
  - 6)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박람회 등의 종료 후 반출되는 물품
  - 7)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 8)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하여 반입한 기계 및 장치
  - 9) 대학 및 연구기관이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성능검사 등을 위탁받아 반입한 검사의뢰 물품 및 검사장비
- 나. 무상으로 반입할 예정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 1) 금속제 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될 용기 또는 기구
  - 2)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 3) 외국에서 영화(뉴스 포함)를 촬영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반출하는 영화촬영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로서, 해당 영화촬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다.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이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시 반출하는 물품

**4. 영 제19조제2호마목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외국에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무상으로 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체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에서 무상 또는 계정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무상 또는 계정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및 동 시설보완용 부분품, 소모성 기자재 또는 시설재(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영 제19조제2호바목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우리나라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또는 외교 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 나. 외국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훈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군공용물품
- 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우호의 목적으로 기증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마. 국제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기용 물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
- 바. 무상으로 반출하는 구호품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에 반출하는 국내우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해외우표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반출하는 국내우표
- 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통상대표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반출하는 공용물품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외무공무원 및 그 가족이 반출하는 자용물품

- 자. 국제협약 등에 의한 조사단 또는 사찰단이 협약 등에 의한 조사 또는 사찰을 위하여 반출하는 장비, 물품 및 그 구성원의 자용물품

#### 6. 영 제19조제2호사목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 필름을 포함한다.)
- 나. 뉴스를 취재한 필름이나 녹음테이프 등으로서 우리나라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의 특파원이 있는 본사, 지사 또는 주재원 등 앞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다.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 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인정된 용역계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무상으로 반출하는 국산영화
- 마.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은 무역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무역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반출하는 물품
- 바.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출하는 연구용 기자재·원료 또는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 사. 그 밖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반출의 목적·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나. 수입승인의 면제<sup>149)</sup>

##### 1.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입승인 면제

- 가.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목적, 체류의 기간, 입국자의 직업 등의 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49)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 나.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시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입국시에 반입하는 물품
- 마.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의하여 반입하는 업무용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을 받아 반입하는 물품
- 바. 정부의 초빙이나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사절단원의 업무용 물품

## 2. 영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조난선박의 수리 또는 구호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선박이 항해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그 선박의 적재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나. 긴급을 요하는 항공기의 부분품(항공용 유류 및 비상구급용품을 포함한다), 공항 내에서 항공기에 전용되는 지원장비의 부분품, 수리용품 및 수리용 원료를 구매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 그 구매절차에 의하여는 적기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다. 긴급을 요하는 국제통신시설의 수리용 부품과 기기를 구매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적기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라. 긴급을 요하는 해난구조용품으로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적기 공급이 불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해난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마. 긴급을 요하는 견품으로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적기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3. 영 제19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유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미화 5만 달러 상당액(과세가격 기준)이하의 물품
- 나.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제조용 원료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
- 라. 수입된 물품이나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 마. 수입물품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동 물품의 유지보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해당  
물품의 수출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 바.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한  
물품으로 다시 반입하는 물품
- 사.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공할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로서 세관장이 해당 수출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아. 무상으로 반입하는 라벨(LABEL), 택(TAG) 등 부자재
- 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주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입  
하는 나용선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반입하는 임차항공기. 다만,  
장래 소유권이 이전되는 국적취득조건부의 것을 제외한다.
- 차.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된 원료의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카.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가 현지에서 사용한 후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  
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타.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치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외국상사의 지사나 출장소 등에 무상으로 송부된 사무용품, 소모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파. 건설용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하. 우리나라에서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물품으로서 해당 운항사항업을 행하는 자(당해 사업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되어 오는 물품
- 거.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소모성 자재 또는 시료로서 해당 수출물품의 성능, 시험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너. 항공산업용으로 도입하는 중고 치공구
- 더. 그 밖에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4. 영 제19조제2호라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무상으로 반출할 예정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 1) 외국의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특파원으로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자가 뉴스의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필름 또는 녹음테이프
  - 2) 금속제 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
  - 3)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기구로서 해당 영화촬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4)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 흥행업자의 흥행용 물품
  - 5) 텔레비전 방송국이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반입한 영화필름
  - 6) 공사용(수리용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용의 기계 또는 기구
  - 7)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 8)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 9)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기계 또는 장치로서 한국기계공업

진흥회장이 추천하는 물품

- 10) 대학 및 연구기관에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성능검사 등을 위탁받아 반입하는  
검사의뢰 물품 및 검사장비
- 나. 무상으로 반출된 물품을 다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 1) 금속제 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
  - 2)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 3) 외국에서 영화(뉴스필름을 포함한다)를 촬영하기 위하여 영화제작자가 반출한  
영화촬영용의 기계·기구
  - 4) 외국에서 개최된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된 물품으로서 반송  
되어 온 물품
  - 5)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합작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한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한 물품
  - 6)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한 물품
- 다.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 5. 영 제19조제2호마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체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에서 가공할 것을 목적으로 무상 또는 계정 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원료 및 동 시설보완용 부분품, 소모성 기자재 또는 시설재  
(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나. 「관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의 판매용 물품으로서 관세청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 6. 영 제19조제2호바목에 따른 수입승인 면제

- 가. 국가원수에게 반입되는 물품
- 나. 우리나라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훈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군대, 군함 또는 공관으로부터 반입되는 공용물품
- 라. 사원, 교회 등에 기증된 식전용품 및 예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되는 물품
- 마.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된 급영품 및 「관세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지정된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어 직접 사회복지용에 공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바.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 그 밖에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한 시설에 표본, 참고품,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되는 물품
- 사. 외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우호의 목적으로 기증되어 반입되는 물품
-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해당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물품
- 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발행하는 유네스코구폰과 교환으로 송부되어 반입하는 물품
- 차.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통상대표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반입하는 공영물품 그 밖에 그 기관에 소속 되는 외국공무원 및 그 가족이 반입하는 자용품
- 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설립자가 법인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만 해당한다)이 같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
- 타. 국제공동경기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단의 경기용 물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
- 파. 국제협약 등에 따른 조사단 또는 사찰단이 협약 등에 따른 조사 또는 사찰을 위하여 반입하는 장비, 물품 및 그 구성원의 자용품

## 7. 영 제19조제2호 사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 나.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반입하는 선박
- 다.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에 반입하는 해체 물품 및 장비품
- 라.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
- 마.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외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품(현지 수리 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바.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용 또는 항공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사.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 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은 수출입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수출입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
-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물품
  - 1) 외항운송업자가 경상운항경비로 구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된 식용품 및 서비스용품
  - 2) 자기치료를 위한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한 물품. 다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명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2천 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
  - 3) 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식용품 및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용품

- 차.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국제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 추천하는 물품
- 카. 시험·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 타.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해외자사에서 구입·사용 후 내용연한이 경과된 방송·촬영장비 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반입목적 등의 사유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추천하는 물품
-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연구 21-05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 개선방안

---

발 행 2021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호 · 이재선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주)삼일기획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129-1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